

| | | | |
|---|--|---|--|
|  인천광역시 | 보 도 자 료 | |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
| | 배포일자 | 2023년 10월 10일(화) 총 4매 | |
| 담당 부서 택시운수과 | 담당자 | • 택시정책팀장 오윤주 ☎440-3801 • 담당자 이원희 ☎440-3803 | |
| 사진(이미지)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한다.

- 10일부터 장애인콜택시 22대 증차 운행 -

- 법정 대수 85% 충족 ... 내년 100% 보급 완료 목표 -

인천시가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15대로 늘리고, 운전원 증원채용(22명)도 완료해 10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대 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15대의 장애인 특장차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증차 운행으로 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대 증차와 더불어 노후 차량 8대도 신차로 교체된다. 시는 신규 구입한 특장차 30대를 인천교통공사에 인계하는 인계식을 10일 오후 2시 30분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

인계식에 참석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고 말했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천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1577-0320, 032-430-7000)에 등록해야 하며 이
용 시 인터넷(www..intis.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붙임> 장애인콜택시 운영 안내

참고**장애인콜택시 운영 안내**

- 시 설 명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인천교통공사 위탁운영
(<https://www.intis.or.kr/>) T.1577-0320, 032-430-7000
- 운행차량 : 515대
 - 휠체어 특장차 215대, 비휠체어 바우처택시 300대
- 이용대상
 -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1급,2급 및 3급 뇌병변, 하지지체장애인
 -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진단서 제출)
- 운영시간 : 24시간
- 운행지역 : 인천 및 인접지역(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 부천, 시흥)
 - * 서울지역 59개 종합병원 진료 또는 재활치료 목적 시 운행
- 이용방법 : 이용등록 후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수
 - 접수방법 : 바로콜(접수 즉시 차량 수배 시작) 및 예약콜(이용 2시간전~2일전까지)
- 이용요금

| 시내요금 | | 시외요금 | 비고 |
|-----------------------|---|----------|--------------------|
| 기본요금 1200원 (2km까지) | · 2km 초과 10km까지 ▶ 1km당 200원 · 10km 초과 ▶ 5km당 300원 추가 | 시내요금의 2배 | *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